

-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 관련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[4급(서기관) → 3급(부이사관)] 반영

2. 주요내용

- 기관별 · 직급별 정원 변경(제31조 관련 별표 5)
 - 본청 : 4급(3명 → 2명), 3급(0명 → 1명)

직급별 \ 기관별	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4급	4	3		1		
4급 ~ 5급	1					1



직급별 \ 기관별	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3급	1	1				
4급	3	2		1		
4급 ~ 5급	1					1

- 부칙 시행일(2023년 12월 31일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1조(부시장·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)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그 밖의
 - 가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나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3.11.9. ~ 2023.11.13.)
 - 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 - 라. 성별영향평가 : 의견없음(2023.11.10. 가족지원과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1조(부시장·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)의 일부 개정 관련 인구 10만미만 시·군·구 부단체장 직급 조정 등에 따라, 인구 5만이상 50만 미만의 시·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향[4급(서기관)→3급(부이사관)]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,
-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.